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 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18. 10. 01. 부분개정
2007. 06. 30.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08. 02. 27. 부분개정	2021. 04. 01. 부분개정
2009. 06. 30. 전면개정	2021. 11. 01. 부분개정
2010. 08. 01. 전면개정	2024. 04. 01. 부분개정
2011. 07. 01. 전면개정	2024. 05.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5. 04. 01.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26. 06. 22.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자치기구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교시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의 실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 신문·방송국을 둔다. 단, 신문·방송국은 『신문·방송국 학생언론활동 지원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05.01.>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금지) 본회의 회원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불온(불법)단체조직, 불온 유인물 배포 및 게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효력정지) 본회의 규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연구활동
2. 예술 및 체육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대학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제2장 총학생회

제1절 구성 및 기능

제9조(구성) 총학생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부회장, 여부회장), 각 부서장 및 차장

각 1인을 둔다.

제10조(부서) ①총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사무를 관장한다.

1. 총 무 부 : 제반사업의 기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2. 문 화 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3. 체 육 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4. 복 지 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에 관한 제반사항 및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홍 보 부 : 학내·외 섭외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7. 사 회 부 : 학생에게 유익한 정보수집 및 학생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직무) ①총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총학생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학생회 각 부서장 및 차장은 총학생회장이 요청,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2절 집행위원회

제1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총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규정 개정 및 수정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6.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회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생·취업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3절 재정

제15조(회비 등) ①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생회비를 입학과 동시에 1회만 납부한다.

②학생회비는 학생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총학생회에서 정하되 대의원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04.01.>

④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취업처장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16조(예산편성) ①총학생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 2024.04.01.>

②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의결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경예산 편성 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04.01.>

제17조(결산) ①총학생회장은 회계년도 마감후 1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4.04.01.>

②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친 결산서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04.01.>

제18조(감사) 총학생회는 대의원회의 회계장부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4.04.01.>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학생사업 업체선정) 학생사업(축제, 문화공연 등)에 따른 업체선정은 총학생회에서 제안을 발의하여 업체에서 제안 설명을 하게하며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장, 부회장, 담당부장), 대의원회 간부(의장·총무), 학생·취업처 교직원이 참석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단, 학교비가 오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사무처 계약담당자가 참석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3장 대의원회

제21조(구성) ①대의원회는 학과 2학년 또는 3학년 과대표(이하 “대의원”이라 한다)를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4.04.01.>

②대의원회는 의장 1인, 총무 2인을 두며, 대의원회 의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대의원회 의장은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대의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④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 선출은 3월에 한다.

제22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2. 학생회비 예산의 심의 의결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5. 학생회비 예산집행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회의) ①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분기1회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대학 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학생회장·부회장 불신임 결의안) ①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부회장이 본회 운영상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남부회장, 여부회장 및 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졸업준비위원회

제25조(구성) ①졸업준비위원회는 각 학과 졸업예정 학년 반대표 중 1인을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매 학년도 학기초에 구성한다. 단, 대의원이 졸업예정 학년인 경우 졸업준비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졸업과 관련된 업무(졸업앨범 제작 등)가 없을 경우 졸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4.04.01.>

②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총무 2인,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준비위원장은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졸업준비위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졸업준비위원의 임기는 졸업앨범 제작완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11.01>

④삭제 <2021.11.01>

제26조(기능) 졸업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앨범제작에 관한 사항
2. 삭제<2021.11.01.>
3. 삭제<2021.11.01.>
4. 기타 졸업준비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7조(회의 및 의결) ①졸업준비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및 학생·취업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삭제 <2021.11.01.>

제29조 삭제 <2021.11.01.>

제30조(징계) 졸업준비위원이 업무 수행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이를 변상 조치

하고 학칙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5장 동아리

제31조(동아리 정의) “동아리”라 함은 같은 뜻을 갖고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호인의 모임을 말하며, 대학 동아리의 종류는 다음 각 항의 일반동아리, 학술동아리, 전공봉사동아리, 취·창업동아리로 구분한다.<개정 2018.10.01.>

①“일반동아리”라 함은 대학 전체학과 재학생 중 취미와 기호를 같이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②“학술동아리”라 함은 학과 재학생 중 전공관련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③“전공봉사동아리”라 함은 학과 재학생 중 전공관련 분야에서 습득한 학문과 기술을 사회봉사 활동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④“취·창업동아리”라 함은 학과 재학생 중 취·창업 및 취·창업제반활동을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8.10.01.>

제32조(권리와 의무) ①동아리는 학칙, 학생준칙,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

②동아리는 제35조에 열거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06.22.>

③등록된 동아리는 대학행사 또는 외부행사,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33조(활동기간) 동아리의 활동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초 학생·취업처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34조(등록요건)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고 대학내 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이 일반동아리는 20명, 학술동아리, 전공봉사동아리, 취업동아리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10.01., 2024.04.01., 2026.06.22.>
3. 단체의 가입은 한 학생이 1개 단체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단, 일반, 취·창업동아리는 제외로 한다.)<개정 2018.10.01.>
4. 단체의 회원 가입 대상은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5. 설립 목적이 타 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신규 등록 일반동아리는 1년 동안 준 동아리로 활동하여야 하며 1년간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학생·취업처장이 정규 동아리 등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35조(등록신청) ①동아리로서 재등록 및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취업처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7.05.01., 2020.01.01.>

- | | |
|------------------|--------------------------|
|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 2. 회원명단 1부 |
| 3. 신년도 활동 계획서 1부 | 4. 전년도 활동실적서(재등록 신청서) 1부 |
| 5. 서약서 1부 | 6. 동아리 지도교수 인정서 1부 |
| 7. 단체규약 또는 회칙 1부 | |

②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일반동아리 회장의 자격은 직 전학기 성적(백분위 환산점수)이 75이상인 자로 하며,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21.04.01.>

제36조(동아리 등록 및 승인) 제35조에 의한 등록신청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취업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 단,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재등록이 안 된 단체는 따로 해산신고서를 하지 않아도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05.01., 2020.01.01., 2026.06.22.>

제37조(동아리실) ①학생단체로 인정한 일반동아리는 동아리실을 배정하고, 학술동아리, 전공봉사동아리, 취·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실을 동아리 본부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②지도교수 승인 하에 실습실 등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활동신고) ①동아리의 모든 단체 활동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행사 3일전에 학생·취업처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②동아리가 단체 활동 행사를 계획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1. 학생행사 및 게시 신고서(학생·취업처 소정 양식).<개정 2017.05.01., 2020.01.01.>
2. 세부계획 및 참가자 명단

제39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 받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가 사임 또는 기타 사유로 결위 되었을 경우에는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동아리 지도교수 인정서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④지도교수는 동아리의 계획 및 집행이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교수의 권한) ①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서 동아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이 미온적이거나, 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임원단 재 선출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도교수는 회원이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해서 제명을 할 수 있다.

④지도교수는 동아리 행사시 행사의 목적이 학생신분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행사 도중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생·취업처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42조(동아리 자격 상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생·취업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1. 동아리 활동이 설립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2. 본 대학 학칙, 학생준칙,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 규정의 근본정신에 위반된 활동을 할 경우
3. 허락 없이 동아리방의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4.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아리 대표자가 학생·취업처장에게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후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43조(재정) ①각 동아리의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 및 총학생회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②지도교수와 인솔교수에게는 출장에 따른 출장비 및 동아리 지도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③삭제 <2021.11.01.>

④대학에 요청된 동아리 지원금 및 지도비 등의 금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01.>

제44조(일반동아리연합회 구성) ①일반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일반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일반동아리 연합회는 각 개별 일반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하며, 동아리 연합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21.04.01.>

③삭제 <2021.04.01.>

④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⑤입후보자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성적증명서

제45조(포상) 동아리의 교내외 활동이 우수하여 학교발전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45조의2(창업동아리) ①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교내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따른다.<신설 2026.06.22.>

②제1항에 따른 창업동아리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은 창업 업무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신설 2026.06.22.>

제6장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

제1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6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선거권) 대학의 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48조(피선거권) 총학생회장·부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직전(前)학기 성적(백분위 환산점수)이 82.9이상인 자
<개정 2021.04.01.>
3.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2년제 1학년, 3년제 1학년·2학년 또는 4년제 1학년·2학년·3학년에 한한다.(단, 유급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5. 대의원(과대표) 중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일정에 명시된 2학기 개시 전 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1.>

제49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제로 한다.

제50조(임기) ①총학생회장·부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없다.

②임원이 꺾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선거비용)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에 필요한 홍보비용은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2조(설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제53조(구성) 선관위는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학생지도위원회 위원 및 학생·취업처 교직원, 총학생회장·부회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54조(위원장) ①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간사는 학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05.01., 2021.11.01.>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5조(선관위의 임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각종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당선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사고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의결정족수) ①선관위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절 후보자 등록

제57조(등록) 총학생회장·부회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에서 정한 기일 내에 선관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단, 선거권자는 1인만 추천한다) 1부
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서약서 1부
6. 선거공약(유세자료) 1부
7. 후보자 학부모 승낙서 1부
8.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58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제57조를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본인이 직접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또는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관리

제60조(선출시기)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는 임기개시 30일전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정은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선출시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에 실시한다.

제61조(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 요강
2. 개표결과 및 당선자

제5절 선거운동

제63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시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및 개별적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출마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 비용은 선관위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격 및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③선관위는 입후보 마감 후 후보자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갖는다.(단, 소견발표 시간, 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④등록을 필한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전벽보(가로 38Cm, 세로 53Cm) 200매 및 현수막(가로 6m, 세로 60Cm) 5개를 교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합의하여 선전벽보 및 현수막의 크기 및 수량은 조정할 수 있다.

⑤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⑥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E-mail, 홈페이지 개설·운영, 휴대전화 SMS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4조(금지사항)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자격상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선거권자 50인 이상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3. 선관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4.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5. 선관위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자

제6절 투표 및 개표

제65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66조(투표) ①선거인은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직접·비밀 투표한다.

②선거인은 학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진부착)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다.

제67조(투표소 출입제한) 선관위원장은 투표소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관위원, 참관인, 업무요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제68조(개표) ①개표는 선관위원이 행한다.

②개표는 투표 완료 즉시 선관위원장의 선언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2.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않았을 때
3.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였을 때
4.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로 판정하였을 때

제7절 당선자결정

제69조(당선자) ①선관위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연장자의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04.01.>

③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0조(당선자 공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2일 이내 당선자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3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71조(재선거) 재선거는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

1. 선거시기 및 일자는 선관위의 제청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정한다.
2.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5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3. 재선거 입후보자는 제57조에서 정하는 등록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관위원장은 이를 2일 이내 공고해야 한다.

제72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단, 임기 만료일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9절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제73조(이의신청)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체적 사실을 명기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의 처리)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

하여 이를 조사, 심의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후보자 자격박탈,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결정한다.

제7장 규정개정

제75조(규정개정) ①이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②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8장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

제76조(목적) 학생들의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여가활용 및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생활동을 지원한다

제77조(정의) “학생활동”이라 함은 단체등록을 필한 학생자치단체 또는 교직원의 지도를 받는 단체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말한다.

1. 학술연구활동
2. 문화예술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스포츠 및 취미활동
5.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등 학생활동
6. 기타 학생·취업처장이 인정하는 학생활동<개정 2020.01.01.>

제78조(학생활동 지원)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학생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 ②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 ③학생활동 상담,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④기타 학생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

제79조(지원대상) ①대외적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

- ②학생들의 자아개발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 ③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
- ④교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 ⑤학업 및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활동
- ⑥학생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기간(사고일 180일)초과 및 보상금액 초과로 인한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미적용 치료비 및 위로금
- ⑦사회봉사와 관련된 활동
- ⑧학생활동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사무기기 등을 지원
- ⑨학생상담에 관련된 활동
- ⑩기타 학생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80조(지원결정) ①학생·취업처장은 학생활동(프로그램)의 내용 및 행사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②지원을 받은 단체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③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1조(학생서비스 정책 수립) ①학생서비스 전담 부서는 매년 2학기 말에 학과 및 행정부서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생서비스 지원정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립된 학생서비스 지원정책 계획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한다.

제82조(평가) ①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여 년 1 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③평가 및 설문조사는 학생·취업처 평가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9장 보칙

제83조(규정에 없는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도호국단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급 대장과 부서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 등으로 한다. 단,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현 학생회칙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회장단은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처리기간		해 산 신 고 서		수수료
7 일				없 음
등 록 단 체	① 명 칭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④ 대표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대표주소			
⑦ 해산 연월일				
⑧ 해산 사유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 규정 제42조(동아리자격상실)①항 호		
대전보건대학교 학생활동 지원 및 서비스 규정 제42조 ②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단체(동아리)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취업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